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1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5.

발 의 자: 박용갑・복기왕・장종태

윤종군 • 문진석 • 정준호

이해식 · 김남근 · 한준호

박민규 • 박정현 • 이훈기

김동아 • 박해철 • 허성무

추미애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가구·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.

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, 이 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건축물 내·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본문 중 "없도록"을 "없고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·차단 하도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건축물의 설계) ① (생	제23조(건축물의 설계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	②
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	
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	
전·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<u>없</u>	<u>없</u>
도록 설계하여야 하며, 국토교	고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ㆍ차
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	단하도록
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	
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	
만, 해당 건축물의 공법(工法)	
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	
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	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